

의안 번호	2569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3. 24.(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24.(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4. 3.(금)

2. 제안이유

-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청년디딤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취·창업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 1항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나. 위탁의 필요성

- 청년디딤터는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취·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단체에 위탁 운영

다. 위탁사무 내용

- 청년 취업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년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년디딤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그 외 청년디딤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종사자
청년디딤터	학성로95-6 (성남동)	지하1층, 지상4층 (대지 148.26㎡, 건축연면적 427.71㎡)	2명 (비상근센터장 1, 실무자 1)
구분	시설구성		면적(㎡)
지하1층	창고, 통신실		43.2
지상1층	운영사무실, 공유주방		93.0
지상2층	회의실		102.45
지상3층	청년기업 입주사무실(2인-3실, 4인-1실)		102.45
지상4층	청년기업 입주사무실(2인-1실, 4인-1실), 공유주방, 세탁실, 샤워실		86.61
위치도			

- 위탁기간: 2026. 7. 1. ~ 2028. 6. 30. (2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 연 120백만원(구비)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센터 설치·운영 등)에 민간위탁사무 대상 명시 ○ 청년 취창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단체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재원조달의 다양화(공모사업 선정 등)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절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자격 갖춘 직원 및 수행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 ○ 또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입주기업의 매출,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도 등으로 성과 측정 가능 ○ 운영비 정산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이용대상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청년 창업기업 및 취·창업 준비 청년들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가능

☞ **종합의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함.

마. 추진 일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4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6. 5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6. 5월

4. 근거법규

- 「청년기본법」 제4조, 제18조
-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년디딤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6.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공간 제공을 위해 전문성 있는 취·창업기관(단체)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근거법규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